

2012년 10월 20일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 경찰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25페이지

- ①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된다.
- ②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된다.
- ③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 ④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정답 - ④

해설 -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된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업무의 독자성에 의한 구분이다.

* 정리 - 경찰의 분류

경찰의 분류

- ① 행정경찰 - 사법경찰 : 3권 분립사상, 경찰의 목적에 따른 구분
- ② 보안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 : 업무의 독자성(다른 행정작용에의 부수여부)에 따른 구분
- ③ 예방경찰 - 진압경찰 :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구분
- ④ 국가경찰 -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경찰의 조직·인사·비용부담)에 따른 구분
- ⑤ 평시경찰 - 비상경찰 :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적용법규에 따른 구분
- ⑥ 질서경찰 - 봉사경찰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50페이지

-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 ②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 ③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 ④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정답 - ①

해설 -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준 것은 ‘공공의 신뢰’가 아니라 ‘공정한 접근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이다.

3.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131페이지

-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에 영향이 있으나, 상급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 변경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항일 것이 있다.
-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 직무명령은 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훈령은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훈령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다. 직무명령은 수명공무원이 변경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항일 것은 훈령의 실질적 요건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이다.

4.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3차)- 장정훈 기본서 156~159

-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장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소속 장관 X)**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장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5. 「경찰공무원 징계령」 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164페이지, 167페이지

-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 ②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6.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162페이지, 163페이지

- 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 ④ 견책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정답 - ②

해설 - ①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삭제할 수 있다 X)**(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 제3항)

④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이다.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

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은 감봉이다.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203페이지~

- | |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 ㉡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해 유치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구두로 소속과 성명만을 밝히면 된다. |
| ㉣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위해의 방지 X)**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 경찰관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8.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171페이지, 172페이지

- | |
|--|
|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즉,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게 아니라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자격정지 X)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11조).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9. 「경찰공무원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137페이지, 145페이지, 150페이지

- | |
|--|
| ㉠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 ㉤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3조). - 기본서에 없는 지문입니다ㅠㅠ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대통령령 X)**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3항). - 기본서에 없는 지문입니다ㅠㅠ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규채용될 수는 없지만, 당연퇴직사유는 아니다.

10. 「보안업무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 비밀로 한다.
-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인가권자이다.
- ④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이다. Ⅲ급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 신원조사대상자

- * 혼포장대상자 X

丁경장 : 법(法)상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① 甲경갑 ② 乙경위 ③ 丙경사 ④ 丁경장

정답 - ③

해설 - 실종당시(실종신고당시 X)14세 미만의 아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에 해당된다.

12.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473페이지

- ①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②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다.
- ③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적극적·동태적 개념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소극적·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④ 경비경찰의 활동은 하향적인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강조한다.

정답 - ③

해설 -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이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인데 이때의 보존은 소극적·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동태적 의미의 활동을 말한다.

1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다음의 설명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487페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긴급재난지역 ② 재난통제지역
- ③ 특정재난지역 ④ 특별재난지역

정답 - ④

14.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553페이지

- ①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②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④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

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①

해설 - 18세 미만(이하 X)(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이하 X))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호).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2.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癲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

15. 다음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지역경찰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 중 관련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명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538페이지 539페이지

- ①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③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났더라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④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정답 - ④

해설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

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1272).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613페이지 615페이지 622페이지 623페이지

-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①

해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X)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 X)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㉔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12시간 X)**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17. 다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의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649페이지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① 10, 15 ② 15, 10 ③ 10, 10 ④ 15, 15

정답 - ①

해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8. 「국가보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689페이지~691페이지

㉑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㉒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㉓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㉔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④

해설 - ㉑ 국가보안법 제1조

㉒ 국가보안법 제18조 제1항

㉞ 국가보안법 제14조

㉞ 국가보안법 제20조

19.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703페이지, 705페이지, 706페이지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5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④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 ④

해설 -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사본 X)**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8조 제4항).

②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15일 X)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17조 제3항).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 X)**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보안관찰법 제12조 제3항).

④ 보안관찰법 제12조 제9항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 채용 3차) - 장정훈 기본서 763페이지

①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②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위하여 발행한다.

③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한다.

④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는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한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정답 - ①

해설 -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은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범죄수법수배서)이다.

* 인터폴수배서

적색수배서 (Red Notice)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청색수배서 (Blue Notice)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일반형법위반자로 범인인도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발행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행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장 물 수 배 서 (Stolen Property Notice)	도난당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에 대하여 상품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자 주 색 수 배 서 (Purple Notice (Modus Operandi))	① 범죄수법수배서 ② 세계 각국에서 사용된 새로운 범죄수법을 사무총국에서 집중관리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배포하여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케 할 목적으로 발행
오 렌 지 수 배 서 (Orange Notice)	폭발물, 테러범(위협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INTERPOL-UN 수배서	UN과 INTERPOL이 협력하여 국제 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

